건간을 새롭게 신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 제57호

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경제문화국장			
제출연윌일	2023. 4. 11.			

예산실장 심사필

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57호 제출연월일 : 2023. 4. 11. 제 출 자 :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체육진흥과장

1. 제안이유

현행 조례는 관리대상 체육센터를 논산국민체육센터와 강경수영장으로 하고 있음. 하지만 신규 체육센터(연무국민체육센터)가 준공됨으로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센터 시설 이용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객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 신규 체육센터(연무국민 체육센터)를 포함함.(안 제3조제4호)
- 나. 지도 강사 위촉 자격기준 관련하여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포 함함(안 제18조제3항 별표2)
- 다. 「행정기본법」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(제7조의2 신설)에 맞게 나이에서 "만"표시 삭제함.(안 제2조제7호~제9호, 안 제2조제11호, 안 제6조제5호, 안 제11조제4호, 안 제12조제5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부패영향 평가 : 원안동의[기획감사실-3115(2023. 3. 28.)호]
- 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없음[복지정책과-9229(2023. 3. 20.)호]
- 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[예산실-2847(2023. 3. 8.)호]
- 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 - 가) 예고기간 : 2023. 3. 9. ~ 2023. 3. 29. (20일 이상)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- 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체육진흥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"논산국민체육센터"를 "논산·연무 국민체육센터"로 한다.

제2조제7호 중 "만 3세"를 "3세"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"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"를 "6세 이상 12세 이하"로 하며, 같은 조 제9호 중 "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"를 "13세 이상 18세 이하"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 중 "전투경찰, 의무경찰, 경비교도대원, 의무소방원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"을 "사회복무요원 등 포함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1호 중 "만 19세"를 "19세"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논산국민체육센터"를 "논산·연무 국민체육센터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연무국민체육센터

가. 체육시설: 수영장, 헬스장, 다목적실,

나. 후생복지시설 : 휴게실, 의무강사실

다. 부대시설: 사무실, 탈의실, 샤워실, 체온유지실, 화장실, 매표소, 창고. 주차장 등 제4조제3항제6호 중 "제4호"를 "제5호"로 한다.

제6조제5호 중 "만3세"를 "3세"로 한다.

제11조제4호 중 "만65세"를 "65세"로 한다.

제1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"를 "13세 이상 55세 이하"로 한다.

4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

별표 2 중 수영란과 안전근무요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	O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					
	소지한 자로서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(수상구조사, 인명구					
 수 영	조요원 등) 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					
7 8	O 수영연맹 또는 근대5종연맹에서 추천한 선수경력 3년					
	이상인 자로서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(수상구조사, 인명					
	구조요원 등) 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					
안전근무 요원	O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(수상구조사, 인명구조요원 등) 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				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	관	부	서	성		명
입	체 육	· 진 흥 :	과 장	김	일	규
안	체육	시설운영	팀장	남	기	호
자	담	당	자	남 (041	성 -746-8	현 405)

□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복	제1조(목적)
지증진과 건강증진 및 건전한	
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<u>논</u>	<u>-</u>
<u>산국민체육센터</u> 와 강경실내수	<u>산·연무 국민체육센터</u>
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	
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	
다.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	
같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"유아"란「유아교육법」제2	7
조에 의한 <u>만 3세</u> 부터 초등학	<u>3세</u>
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보	
호자와 동행하는 자를 대상으	
로 한다.	
8. "어린이"란 <u>만 6세 이상 만 12세</u>	8 <u>6세 이상 12세 이하</u>
<u>이하</u> 인 자를 말한다.	<u>.</u>
9. "청소년"이란 <u>만13세 이상 만</u>	9 <u>13세 이상 18세</u>
<u>18세 이하</u> 인 자를 말한다.	<u>이하</u>
10. "군인"이란 신분증이나 휴	10
가증을 소지한 부사관 이하의	
자(전투경찰, 의무경찰, 경비	<u>(사회복무요원 등 포함)</u>
교도대원, 의무소방원 및 공익	

근무요원 포함)를 말한다

11. "성인"이란 <u>만 19세</u> 이상인 자를 말하며, 65세 이상인 자 를 경로 대상으로 한다.

12. ~ 15. (생략)

제3조(운영시설) <u>논산국민체육센</u> <u>터</u> 및 강경실내수영장(이하 "체 육센터"라 한다.)의 운영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한다.

1. · 2. (생략)

3. 삭 제

<신 설>

제4조(사용허가) ①・② (생 략)

③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의 순 서에 따라 허가한다.

	11 <u>19세</u>
	12. ~ 15. (현행과 같음)
제	3조(운영시설) <u>논산·연무 국민</u>
	체육센터
	<u>.</u>
	1. · 2. (현행과 같음)
	4.연무국민체육센터
	가. 체육시설 : 수영장, 헬스
	<u>장, 다목적실,</u>
	나. 후생복지시설 : 휴게실,
	<u>의무강사실</u>
	다. 부대시설 : 사무실, 탈의
	실, 샤워실, 체온유지실, 화
	장실, 매표소, 창고, 주차장
	<u> </u>
제	4조(사용허가) ①·② (현행과
	같음)
	③

1. ~ 5. (생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<u>제5호</u>-----6.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사항 이외의 그 밖의 활동 ④ (현행과 같음) ④ (생략) 제6조(입장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제6조(입장의 제한) 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1. ~ 4. (생 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만 3세 미만의 영아(단, 이용 5. 3세 -----자에 한한다) 제11조(사용료 감면) 다음 제1호 제11조(사용료 감면) -----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,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 는 경우에는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1. ~ 3. (생 략) 4. 만65세 이상의 노인, 장애인 4. 65세 -----및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, 「장 애인복지법」에 의해 설립된 협회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

5. (현행과 같음)

5. (생략)

제12조(이용료 할인) 제12조(이용료 할인) ①·② (생략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(3) -----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50 퍼센트를 할인 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 4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8 한 법률|제59조에 해당하는 사람 조에 해당하는 사람 5. ~ 9. (생 략) 5. ~ 9. (현행과 같음) ④ (생략) ④ (현행과 같음) ⑤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13세 이상 55세 이하 -----

⑥ (현행과 같음)

가임기 여성에게는 이용료의 10

퍼센트를 할인 할 수 있다.

⑥ (생략)

	현 행		개 정 안				
[별표 2] 지도	강사 위촉 자격기준(제18조 관련)	[별표 2] 지도강사 위촉 자격기준(제18조 관련)					
종 목	자 격 기 준	비고	종 목	자 격 기 준 비	비고		
수 영	○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<u>인명구조 자격증</u> 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○ <u>수영연맹</u> 에서 추천한 선수경 력 3년 이상인 자로서 <u>인명구조</u> <u>자격증</u> 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 증을 소지한 자		수 영	○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 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서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(수상구 조사, 인명구조요원 등) 또는 수 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○ 수영연맹 또는 근대5종연맹에 서 추천한 선수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(수 상구조사, 인명구조요원 등) 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			
안전근무 요원	O <u>인명구조 자격증</u> 또는 수상 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		인전근무 요원	O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(수상구 조사, 인명구조요원 등) 또는 수 상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			
헬스	○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○ 헬스지도 또는 선수경력 3년 이 상인 자로서 협회에서 추천한 자		헬스	(현행과 같음)			
실내미용 체조	○ 해당 프로그램 전문스포츠지 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○ 해당 프로그램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협회에서 추천한 자		실내미용 체조	(현행과 같음)			
아쿠아 로빅	○ 아쿠아로빅 자격증 소지자 ○ 아쿠아로빅 지도경력 3년 이 상인 자로서 협회에서 추천한 자		아쿠아 로빅	(현행과 같음)			

붙임

비용추계서

-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 -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(사용허가)
 -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(사용료 및 이용료)
- 2. 비용추계결과
 - 가. 추계의 전제
 -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세입
 - 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수입 발생에 따른 세입 ※ 논산국민체육센터를 기준으로 산정
 - 나. 추계결과 : 444,000,000원(년)
 - 행정재산 대부료 : 12,000,000원(년)
 - O 체육센터 사용료: 9,000,000원(년)
 - 체육센터 이용료 : 423,000,000원(년)
- 3. 작성자

체육진흥과장 김일 규

〈연도별 비용 추계표〉

(단위 : 천원)

=	구 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	입	444,000	444,000	444,000	444,000	444,000	2,220,000
세	외수입	444,000	444,000	444,000	444,000	444,000	2,220,000
세	斊						
재	원 조달	444,000	444,000	444,000	444,000	444,000	2,220,000
	소 계						
의존 재원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	소 계	444,000	444,000	444,000	444,000	444,000	2,220,000
자체 수입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444,000	444,000	444,000	444,000	444,000	2,220,000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약	법 특별회계						
<i>기</i> (채무투	타 땀, 만자 등						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「지방자치법」제22조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하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「체육시설의 설치・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조. 제5조. 제6조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·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제5조(전문체육시설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·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,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 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수 있다.
- 제6조(생활체육시설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
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□「행정기본법」

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